

보수규정시행내규

제정 1983.12.26 내규 제 2호	1998. 2.18 내규 제 80호	2012. 1.25 내규 제232호
개정 1985. 3.24 내규 제 5호	2000.10.12 내규 제 94호	2013. 5.29 내규 제252호
1987. 9. 7 내규 제 10호	2002. 6.21 내규 제111호	2013. 9.10 내규 제256호
1988. 1.20 내규 제 11호	2003.11.18 내규 제123호	2015. 3.26 내규 제288호
1990. 1.30 내규 제 13호	2004. 1.31 내규 제124호	2017. 3.10 내규 제333호
1990. 4. 7 내규 제 16호	2005. 1.26 내규 제133호	2018. 1. 5 내규 제366호
1990. 7.14 내규 제 19호	2005.12.23 내규 제147호	2018. 5.21 내규 제372호
1991. 8.24 내규 제 29호	2006. 3. 7 내규 제151호	
1992. 7. 3 내규 제 34호	2006.10.10 내규 제160호	
1993. 7. 1 내규 제 40호	2007. 4.11 내규 제164호	
1993.11. 9 내규 제 46호	2008. 2.18 내규 제178호	
1996. 1. 8 내규 제 57호	2009. 3. 1 내규 제189호	
1996. 9.25 내규 제 64호	2010. 6. 1 내규 제211호	
1998. 1.10 내규 제 77호	2011. 4. 1 내규 제219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보수규정(이하 “규정” 이라 한다)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수계산) 규정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퇴직 또는 사망시의 보수는 당해월의 보수전액을 지급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및 휴일근무수당은 실제 근무시간 해당분을 계산 지급한다.

제3조(결근자의 보수계산) 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결근자(유계, 무계결근 포함)의 체수당 지급제한 규정은 가족수당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징계에 의한 보수지급 제한) 인사규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봉 및 정직 처분을 받을 경우의 보수는 다음 각호 1과 같이 계산 지급한다. <개정 2018.1.5.>

1. 감봉의 경우 감봉기간중 월 감봉액은 1일 평균임금의 1일분의 2분의 1로 하며, 그 총액은 월 평균임금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 정직의 경우 정직기간중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2006.3.7 개정)
3. 강등의 경우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 중 직무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직무급을 제외한 기본급만 10분의 1을 감하여 지급한다.(2015.3.26 본호신설)

제5조(파견자의 보수계산) ①다른기관에 파견 또는 취업규칙 제51조에 의해 교육훈련 파견되는 임원 및 직원의 보수는 본직에서 근무하는 것에 준하여 지급한다.

②업무의 필요에 따라 다른 부서에 파견근무하는 직원의 보수는 파견부서의 근로조건에 의하여 원소속 부서에서 지급한다. 다만, 필요시 파견부서에서 지급할 수 있다.
(2006.10.10 개정)

제5조의2 (삭제)

제6조 (삭제)

제7조(제수당 지급기준) 규정 제13조의 제수당 지급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기술수당 :

가. 기술수당 지급대상자에 대하여는 <별표1>에 따라 지급요건 해당일부터 지급한다.(개정 2006.3.7, 2011.4.1, 2013.5.29, 2015.3.26, 2018.5.21.)

나. 가항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기술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담당부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시간외근무수당 <개정 2018.5.21.>

가. 취업규칙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명령을 받아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다만, 결근, 조퇴, 공가 및 병가(예비군 훈련 및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은 제외로 한다)로 근무하지 아니한 시간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처장급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직 중 사무·기술·조사·조무직군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3. 휴일근무수당 <개정 2018.5.21.>

가.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처장급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하며, 일반직 중 사무·기술·조사·조무직군에 대해서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보상휴가를 부여한다.

4. 야간근무수당 : 취업규칙상의 야간에 근무한 직원에게 <별표2>의 기준으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되 그 세부사항은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단, 처장급 관리자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5.21.>

5. 연차수당 (2005.1.26)

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연차휴가기간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무한 직원에게 지급한다.(2005.1.26, 2009.3.1)

나. 연차수당은 당해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당해 12월중에 지급하고 익년 1월에 정산한다.(2005.1.26)

다. 취업규칙상의 휴가자와 업무상 부상, 질병 및 산전산후 휴가기간, 공로연수기간은 연차 계산에 있어 출근한 것으로 본다. 단, 병가는 제외한다.(2005.1.26)

라. 직위해제자, 징계처분자의 지급기준액은 징계처분전의 통상임금으로 한다.

5-1. 삭 제(2009.3.1)

6. 상여수당

가. 상여수당은 지급일 현재 기본급(본봉 + 직무급 + 호봉급)에 해당 지급률을 승하여 지급하되 재직중인 임직원에 한한다. 다만, 휴직자, 직위해제자, 정직자, 강등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자,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자는 제외한다.(개정 2006.3.7, 2015.3.26)

나. 상여수당은 1월에서 11월 까지는 월 기본급의 35%를, 12월에는 월 기본급의 15%를 지급하며, 성과급은 가목에서 규정한 상여금 지급대상자에게 지급하되 세부사항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단, 연봉제 적용 대상자는 연봉제시행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03.11.18, '05.1.26, '07.4.11, 2008.2.18, 2011.4.1, 2017.3.10.)

다. 신규채용자, 복직자 및 퇴직자에 대하여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월할계산 지급하되 15일 이상은 월로, 15

일미만은 계산에서 제외한다.

라. 상여수당을 지급받은 후 퇴직 또는 사망한 직원에 대하여는 이를 회수하지 아니한다.

7. 위험수당 : 위험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별표3>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개정 2015.3.26)

8. 특수직수당 : 특수직수당의 지급대상자는 <별표4>의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게 발령일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신설 2018.5.21.>

[중전 제8호는 제9호로 이동<2018.5.21.>]

9. 가족수당

가. 임직원으로서 부양가족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5>에 의거 가족수당을 지급한다.(2010.6.1, 2012.1.25, 2013.5.29)<개정 2018.5.21.>

나. 가항에서 “부양가족”이라 함은 부양의무를 가진 직원들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 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취학, 요양, 또는 주거의 형편이나 직원의 근무형편에 의하여 당해 직원과 별거하고 있는 가족은 부양가족에 포함한다.

(1) 배우자

(2) 본인 및 배우자의 60세(여자인 경우에는 55세)이상의 직계존속(계부 및 계모를 포함한다. 이하 이목에서 같다) 및 60세 미만의 직계존속이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2002.6.21, 2013.9.10)

(3)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 및 20세 이상의 직계비속 자녀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2002.6.21, 2012.1.25, 2013.9.10)

(4)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본인 및 배우자의 20세 미만의 형제자매 및 20세 이상의 형제 자매가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2002.6.21, 2013.9.10)

(5) (2002.6.21 삭제)

(6) (2002.6.21 삭제)

(7) (2002.6.21 삭제)

다. 나항에서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9.10)

(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7급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4)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장애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5)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른 상이등급 제1급 내지 제6급

라.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부부가 공단에 동시 취업할때 배우자 가족수당은 그중 1인에게 지급하며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그중 1인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마. 가족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직원은 주민등록등본을 급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직계존속과 별거하는 경우에는 장남인 직원(형제 및 자매의 사망으로 인한 실질적 장남 포함)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부양가족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1.4.1)

바. 가족수당은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하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2014년 12월 31일 이전 사유발생분 제외)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하고 부양가족의 요건을 상실한 자에 대한 수당은 요건을 상실한 날이 속하는 달분까지 지급한다.(개정 2013.9.10, 2015.3.26)

사. 이사장은 직원이 허위의 방법으로 가족수당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하도록 하고 당해직원에 대하여는 1년의 범위 내에서 가족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중전 제9호는 제10호로 이동<2018.5.21.>]

10. 일·숙직수당 : 일·숙직수당은 당직업무 주관부서에서 당직근무를 한 직원에 별지의 <별표6>에 의거 일·숙직수당을 지급한다. (개정 '07.4.11, 2018.5.21.)

제8조(급여자료의 통보) ①각 부서장은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한 보수지급 및 제수당 지급기준에 관계되는 직원의 발령 및 임명사항은 발령 또는 임명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속직원의 근태사항은 익월 5일까지 인사급여담당 부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2005.12.23)

②인사담당 주무팀장은 제1항의 근태사항을 수합하여 익월 8일까지 급여담당 주무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급여담당 주무팀장은 제1항, 제2항의 통보에 의하여 보수에 관한 업무를 정산처리한다.

제9조(지급의 특례) ①(2005.12.23 삭제)

②이 내규에 의한 보수의 지급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시행하여야 한다.(‘98.1.10)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83년 12월 26일부터 적용한다.

②(경과조치) 이 내규 시행전에 방침결정에 의하여 지급된 보수는 이 내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본다.

③(경과조치) 이 내규의 시행과 동시에 통보된 제수당 지급방침은 이 내규와 상치하는 범위내에서 그 효력을 상실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85년 3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87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0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1998. 2.18)

①(시행일) 이 내규는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0. 10.12)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2. 6.21)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토요일숙직수당 지급에 관하여는 이를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3.11.18)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4. 1.3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5. 1.26)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3.7)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4조, 제7조의 직무급으로의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6.10.10)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7.4.11)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8.2.18)

①(시행일) 이 내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3.1)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0.6.1)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1.4.1)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제7조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는 201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2.1.25)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부터 시행하되,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5.29)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단, 제7조 <별표 4>에 관한 사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3.9.10)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제7조 8호 바목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5.3.26)

①(시행일) 이 내규는 공포일로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3.10.)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1.5.)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5.21.)

이 내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 1>(제7조 관련)(개정 2006.3.7, 2011.4.1, 2013.5.29, 2015.3.26, 2018.5.21.)

기술수당 지급기준

등급	지급 대상	지급 요건	비고
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리사, 기술사, 기능장, 수의사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련 법령에 의한 기술 자격 및 면허 취득자로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부서 근무자에게 지급한다.	복수의 자격에 대한 기술수당 및 특수직수당(법정관리자수당 제외)과의 중복 수혜시 하나의 수당만을 지급한다.
나	기사, 산업기사(구 기사 1, 2급 및 기능사 1급), 간호사, 영양사		
다	기능사(구 기능사 2급 및 기능사보), 간호조무사		

기술수당 지급액

(단위 : 원)

호봉 직급 및 등급	1~3 4~6 7~9 10~12 13~15 16~18 19~21 22~24 25~27 28~30 31~33 34~40												
	1급	가	83,900	87,700	91,500	95,300	99,000	102,600	106,000	109,600	113,200	116,100	118,200
	나	55,900	58,500	61,000	63,600	66,000	68,400	70,700	73,100	75,500	77,400	78,800	80,000
	다	28,000	29,300	30,500	31,800	33,000	34,200	35,400	36,600	37,800	38,700	39,400	40,000
2급	가	75,000	78,800	82,600	86,400	90,100	93,600	97,100	100,700	104,300	107,200	109,300	111,100
	나	50,000	52,500	55,100	57,600	60,100	62,400	64,700	67,100	69,600	71,500	72,900	74,100
	다	25,000	26,300	27,600	28,800	30,100	31,200	32,400	33,600	34,800	35,800	36,500	37,100
3급	가	68,800	72,600	76,500	80,300	83,900	87,500	90,900	94,500	98,200	101,100	103,200	105,000
	나	45,900	48,400	51,000	53,500	56,000	58,400	60,600	63,000	65,500	67,400	68,800	70,000
	다	23,000	24,200	25,500	26,800	28,000	29,200	30,300	31,500	32,800	33,700	34,400	35,000
4급	가	63,600	67,400	71,200	75,000	78,700	82,200	85,700	89,300	92,900	95,800	97,900	99,700
	나	42,400	44,900	47,500	50,000	52,500	54,800	57,100	59,500	62,000	63,900	65,300	66,500
	다	21,200	22,500	23,800	25,000	26,300	27,400	28,600	29,800	31,000	32,000	32,700	33,300
5급	가	56,900	60,700	64,500	68,300	72,000	75,600	79,000	82,600	86,300	89,100	91,200	93,000
	나	37,900	40,500	43,000	45,600	48,000	50,400	52,700	55,100	57,500	59,400	60,800	62,000
	다	19,000	20,300	21,500	22,800	24,000	25,200	26,400	27,600	28,800	29,700	30,400	31,000
6급	가	49,400	53,200	57,000	60,800	64,500	68,100	71,500	75,100	78,800	81,700	83,700	85,500
	나	32,900	35,500	38,000	40,600	43,000	45,400	47,700	50,100	52,500	54,500	55,800	57,000
	다	16,500	17,800	19,000	20,300	21,500	22,700	23,900	25,100	26,300	27,300	27,900	28,500
7급	가	46,600	50,500	54,300	58,100	61,700	65,300	68,800	72,300	76,000	78,900	81,000	82,800
	나	31,100	33,700	36,200	38,800	41,200	43,600	45,900	48,200	50,700	52,600	54,000	55,200
	다	15,600	16,900	18,100	19,400	20,600	21,800	23,000	24,100	25,400	26,300	27,000	27,600
8급	가	36,300	40,200	44,000	47,800	51,400	55,000	58,500	62,000	65,700	68,600	70,700	72,500
	나	24,200	26,800	29,300	31,900	34,300	36,700	39,000	41,400	43,800	45,800	47,100	48,300
	다	12,100	13,400	14,700	16,000	17,200	18,400	19,500	20,700	21,900	22,900	23,600	24,200
9급	가	33,500	37,400	41,200	45,000	48,600	52,200	55,700	59,200	62,900	65,800	67,900	69,700
	나	22,400	24,900	27,500	30,000	32,400	34,800	37,100	39,500	42,000	43,900	45,300	46,500
	다	11,200	12,500	13,800	15,000	16,200	17,400	18,600	19,800	21,000	22,000	22,700	23,300

<별표 2>(제7조 관련)<신설 2018.5.21.>[중전 별표2는 별표3으로 이동<2018.5.21.>]

야간수당 지급기준

지급률	지급대상
통상임금 X $\frac{0.5}{209}$ X 시간	일반직 중 사무·기술·조사·조무직군
통상임금 X $\frac{0.57}{209}$ X 시간	사회복지직

<별표 3>(제7조 관련)<개정 2018.5.21.> [중전 별표3은 별표6으로 이동<2018.5.21.>]

위험수당 지급기준

지급대상	위험수당 지급액												
· 전기관련 국가기술자 격증을 소지하고 고압 3,300볼트 이상 전력 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직원 · 유류 보일러 취급 직원 · 수의사 면허를 소지 하고 맹수, 가축 등 동물 진료 및 치료, 질병예방 관련 업무 를 수행하는 직원	(단위 : 원)												
	호봉 직급	1~3	4~6	7~9	10~12	13~15	16~18	19~21	22~24	25~27	28~30	31~33	34~40
	1급	195,600	204,500	213,500	222,400	230,900	239,200	247,200	255,600	264,200	270,900	275,800	280,000
	2급	174,800	183,800	192,700	201,600	210,100	218,400	226,500	234,800	243,400	250,200	255,000	259,200
	3급	160,500	169,400	178,400	187,200	195,700	204,100	212,100	220,500	229,100	235,800	240,700	244,900
	4급	148,200	157,200	166,100	175,000	183,500	191,800	199,900	208,200	216,800	223,600	228,400	232,600
	5급	132,600	141,600	150,500	159,400	167,900	176,200	184,200	192,600	201,200	207,900	212,800	217,000
	6급	115,200	124,100	133,000	141,900	150,400	158,800	166,800	175,100	183,700	190,500	195,300	199,500
	7급	108,800	117,700	126,600	135,500	144,000	152,400	160,400	168,700	177,300	184,100	189,000	193,200
	8급	84,700	93,600	102,600	111,500	120,000	128,300	136,300	144,700	153,300	160,000	164,900	169,100
9급	78,200	87,100	96,100	104,900	113,400	121,800	129,800	138,200	146,800	153,500	158,400	162,600	

<별표 4>(제7조 관련)<신설 2018.5.21.>[중전 별표4는 별표5로 이동<2018.5.21.>]

특수직수당 지급기준

지급대상	특수직수당 지급액												
장례기사	(단위 : 원)												
	호봉 직급	1~3	4~6	7~9	10~12	13~15	16~18	19~21	22~24	25~27	28~30	31~33	34~40
	1급	279,400	292,200	304,900	317,600	329,800	341,700	353,200	365,100	377,400	387,000	394,000	400,000
	2급	249,700	262,500	275,200	287,900	300,100	312,000	323,500	335,400	347,700	357,300	364,300	370,300
	3급	229,300	242,000	254,800	267,500	279,600	291,600	303,000	314,900	327,200	336,900	343,800	349,800
	4급	211,800	224,500	237,300	250,000	262,100	274,000	285,500	297,400	309,700	319,400	326,300	332,300
	5급	189,400	202,200	214,900	227,600	239,800	251,700	263,200	275,100	287,400	297,000	304,000	310,000
	6급	164,500	177,200	190,000	202,700	214,800	226,800	238,200	250,200	262,400	272,100	279,000	285,000
	7급	155,400	168,100	180,900	193,600	205,700	217,600	229,100	241,000	253,300	263,000	269,900	275,900
	8급	121,000	133,700	146,500	159,200	171,300	183,300	194,700	206,700	218,900	228,600	235,500	241,500
9급	111,700	124,400	137,200	149,900	162,000	174,000	185,400	197,400	209,600	219,300	226,200	232,200	
법정관리자	<별표 3>의 위험수당 지급표에 따른다.												

<별표 5>(제7조 관련)(2010.6.1, 2012.1.25, 2013.5.29, 2017.3.10.)

가족수당 지급구분

구분	수 당 액	비 고
가족수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40,000원 · 부양가족 1인당 2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인 범위 내에서 지급 · 단, 자녀의 경우 인원수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둘째 자녀에게는 월 60,000원을 지급하고, 셋째 이후의 자녀에게는 월 100,000원을 지급한다.

<별표 6>(제7조 관련)(개정 '02.6.21, '04.1.31,'05.1.26, '07.4.11, '09.3.1, 2017.3.10.)

일·숙직 수당 지급구분

구 분	수 당 액	비 고
일·숙직	60,0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직 책임자, 당직자 동액 · 1회 근무시 지급액